

<b>보도</b>	<b>2025.2.4.(화) 10시</b>	<b>배포</b>	<b>2025.2.3.(월)</b>
-----------	-------------------------	-----------	---------------------

담당 부서	은행검사1국	책임자	국 장	김남태	(02-3145-7050)
	검사2팀	담당자	팀 장	박수정	(02-3145-7075)
	은행검사2국	책임자	국 장	박진호	(02-3145-7200)
	검사4팀	담당자	팀 장	김기홍	(02-3145-7220)
	은행검사3국	책임자	국 장	정은정	(02-3145-8350)
	인터넷전문은행검사팀	담당자	팀 장	이훈아	(02-3145-8345)
	금융투자검사2국	책임자	국 장	이현덕	(02-3145-7690)
	자산운용기획조정팀	담당자	팀 장	허승환	(02-3145-7620)

## '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기자설명회 개최

### 주요 내용

◆ **(원인)** '24년 검사결과 단기성과 치중, 건전성·리스크관리 경시, 온정적 조직문화 등으로 거액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와 불건전 업무행태가 반복 발생

#### 1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금융사고 지속

- **前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380억원 추가 적발** (총 금액 730억원)
- **고위 임직원들의 부당대출 취급 3,145억원, 금품수수 사례 다수 적발\***  
\* [부당대출 / 금품수수] (A은행) 1,604억원 / 38백만원, (B은행) 892억원 / 미정, (C은행) 649억원 / 1.3억원
- 파생딜러의 옵션 **평가데이터 입력값 장기간(2년~) 왜곡**을 통한 **손실(약 1,000억원) 은폐 혐의**
- **금융사고** 관련 예방·보고·고발·제재 등 **초 단계 내부통제 부실**

#### 2 단기 실적주의 및 건전성·리스크관리 경시

- **책임준공형 PF 신탁** 관련 위험가중자산 등 반영시 **보통주자본비율 10~20bps 하락** 예상
- **규제를 우회(SPC 이용)\*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거액 대출(3,500억원), 지급보증(6,400억원)**  
\* (예) 「지주회사법」상 계열사 채권 담보취득 금지 → 계열사가 사실상 지배하는 SPC 발행 채권을 담보로 대출
- **자회사 M&A, 해외 자회사 자금지원** 관련 **리스크관리위원회 검토, 이사회 보고·논의 등 의사결정 절차 소홀**로 경영진 견제장치 작동 미흡
- **브릿지론을 부동산담보대출로 편법 취급(9,290억원)**, 이미 **부실화된 해외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2,200억원)**을 **정상 신용등급**으로 평가 후 기한 연장 등

#### 3 취약한 금융소비자 보호

- 연체대출을 법상 **압류금지채권(최저생계비)**과 **상계**, H지수 ELS를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발생
- **신용정보 부당조회, 고객 거래정보 제공 미통보** 등 고객정보 보호 소홀

➔ **(계획)** 금감원은 ①**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현, ②**건전성·리스크관리 강화**, ③**조직문화 쇄신** 등을 통해 은행권 내 누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 예정

## I. 최근 금융사고 현황 및 특징

※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보고한 금액 기준이며 수정 보고서 사고금액 등은 추후 변동 가능

◆ 금융사고는 최근 5년간 증감을 반복하다, '24년 중 급증하였으며 금융사고의 조직화·교묘화로 인해 건당 사고규모(금액)도 대형화되는 모습

- **(현황)** '24.1~9월 중 쏠 금융권에서 총 111건, 2,598억원의 금융사고가 보고되었으며, '23년 同 기간(90건, 1,210억원) 대비 건수·금액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 사고금액은 은행 1,418억원(54.6%), 중소기업 951억원(36.6%) 順이며, 사고건수는 중소기업 46건(41.4%), 은행 44건(39.6%) 順입니다.
- **(특징)** 브로커 또는 직원간 공모 등 금융사고가 조직적이고 교묘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금융사고 규모가 증가한 것은 물론, 건당 평균 사고금액도 급증하는 등 금융사고가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 ① **('24년 급증)** 최근 5년간 금융사고 건수·금액은 증감을 반복\*해 왔으나, '24년은 이미 3분기에 전년도 사고금액 총액을 초과하는 등 연간 기준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건수(건) : (20년) 141 → (21년) 114 → (22년) 119 → (23년) 126 → (24.3Q) 111
    - 금액(억원) : (20년) 1,693 → (21년) 1,019 → (22년) 3,254 → (23년) 1,783 → (24.3Q) 2,598
  - ② **(조직화)** 금융회사 임직원이 단기성과를 위해 브로커 및 다른 임직원과 공모하여 대출서류를 조작하고 전결권을 임의 변경하는 등 조직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내부통제를 무력화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 ③ **(대형화)** '24.1~9월 평균 사고금액은 23.4억원으로 '23년 同 기간(13.4억원) 대비 2배가량 증가하는 등 금융사고 금액이 대형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 '24년 중 금감원 검사를 통해 적발된 금융사고\*까지 고려하면 금융사고의 조직화·대형화는 더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금감원 검사에서 적출된 금융사고는 금융회사의 금융사고 보고 통계에 포함되지 않음

## II. 금융사고 반복 및 불건전 업무행태의 원인

◆ 금감원은 '24년초 H지수 ELS 검사를 통해, 금융회사의 이익을 우선한 무리한 실적경쟁 등\*이 취약한 내부통제로 이어져 불완전판매의 원인으로 작용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음

\* (원인) 과도한 영업목표, 부적절한 KPI 설계,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 판매시스템 부실 등

➔ '24년 NH·KB·우리 등 정기검사에서도 ①단기성과에 치중하는 경영 방침, ②건전성·리스크관리 경시, ③온정적 징계 등 느슨한 조직문화가 금융사고 반복 및 불건전 업무행태의 원인으로 나타남

### 1 단기성과에 치중하는 경영방침

- 금융회사가 중장기적인 경영전략이나 합리적 성과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고객 자산관리, 자산운용, 포용금융 등에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 임직원이 단기성과에 치중하도록 KPI 등을 설계하여 여신 취급, 펀드 판매 등 기본 업무영역에서조차 내부통제 기능이 약화되었습니다.

#### [참고] 단기성과 위주 경영 (예시)

- ① [수익성 위주 성과평가] KPI 수익성 항목에서 고득점시 건전성 항목의 低평가 상쇄 可
- ② [불법·부당대출] 여신 프로세스 취약 → 단기성과를 위해 불법·부당대출 취급
- ③ [高위험 금투상품 판매] 수년간 지속된 펀드 불판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문제 반복

### 2 건전성·리스크관리 경시

- CEO가 재임기간 중 자회사 인수나 해외 진출 등 외형 확대 중심의 과도한 경영목표를 임직원에게 제시하고
  - 임직원은 무리한 목표 달성에 매몰되어 건전성·리스크관리, 이사회 절차 등 내부 견제장치를 경시하는 문화가 조성되었습니다.

#### [참고] 건전성·리스크관리 경시 (예시)

- ① [의사결정 절차 미준수] M&A, 해외진출시 관련 리스크 검토 및 이사회 보고 소홀
- ② [자본비율 관리 미흡] 高위험 투자에 대한 리스크 측정 미흡 → 수정시 자본비율 하락
- ③ [자회사 우회지원] SPC 등을 활용한 우회적 자회사 지원 → 그룹 위험 확대

### 3 온정적 징계 등 느슨한 조직문화

- 확인된 금융사고를 미보고하고 사고자에 대한 조치가 관대하며, 내부제보 등 자체적으로 금융사고를 예방·적발하는 능력이 미흡하여 유사한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 [참고] 온정적 사후 대응 (예시)

- ▶ [숨방망이 처벌] ①여신 관련 자체 징계기준 완화, ②타당한 사유 없이 변상책임 미부과, ③자체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한 조치보다는 교육, 현지 시정으로 종결하는 경향, ④필수 고발대상 기준이 불명확하여 횡령사고자 미고발 등

## Ⅲ. '24년 주요 검사 결과 (잠정)

※ 법규 위반 여부 및 관련 상세 내용은 향후 검사처리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금융사고 지속

- ◆ (원인) 내부통제를 비용적 요소로만 인식하고,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도 순응하는 조직문화로 인해 여신 등 주요 업무영역에서 내부통제 미작동

#### 1 거액 부당대출 사고

- (중합) 현장 검사를 통해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730억원을 포함하여 총 3,875억원(482건) 규모의 부당대출을 확인하였습니다.

< 검사를 통해 확인한 부당대출 >

(단위 : 억원, 건)

구분	A은행	B은행	C은행
금액	2,334	892	649
건수	101	291	90
주요 사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자금대출 취급 시 부도수표를 既거래 중도금 증빙으로 인정</li> <li>▶ 강통법인을 활용한 장기 미분양 상가 털어내기 작업대출 관련 심사 소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위 매매계약서 이용 감정 평가액 부풀리기를 통한 실거래가 초과 대출 취급</li> <li>▶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대출 가능 허위차주 물색 후 타인명의 대출 취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위 매매계약서 이용 감정 평가액 부풀리기를 통한 실거래가 초과 대출 취급</li> <li>▶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대출 가능 허위차주 물색 후 타인명의 대출 취급</li> <li>▶ 자금용도외 유용 방조</li> </ul>
취약점	▶ 여신 취급부터 심사·승인·실행·사후관리 등 여신 프로세스 전반이 부실		

- **(前 회장 관련 부당대출<sup>A은행</sup>)** 정기검사를 통해 기존에 확인된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의심대출 350억원 이외에 다수 임직원이 관여된 부당대출 380억원\*을 추가 적발(총 730억원)하였으며, 730억원 중 451억원(61.8%)은 現 경영진 취임("23.3월) 이후 취급되었습니다.

\* (예) ①시설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부도수표를 既거래 중도금 증빙으로 인정,  
 ②계약서 등 고객 제출 서류 진위확인 소홀, 자기 자금 및 상환능력 심사 부적정 등

- **(연체)** 전체 부당대출(730억원) 중 338억원(46.3%)이 부실화되었습니다. (現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된 부당대출 451억원 중 123억원(27.3%)이 부실화)

既 적발된 350억원 중 대부분(84.6%)이 부실화된 점을 미루어 볼 때, 現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되고 정상으로 분류된 328억 원도 향후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장기간 다수 부당대출이 취급되는 동안 금융지주 차원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 검사를 통해 확인한 부당대출 >

(단위: 억원, %)

구분	취급 시점	정상(A)	연체(B)	합계(C=A+B)	연체율(B/C)
① 기 확인	[前 경영진]	54	184	238	77.3
	<b>[現 경영진]</b>	<b>0</b>	<b>112</b>	<b>112</b>	<b>100</b>
	소계	54	296	350	84.6
② 추가 확인 (정기검사)	[前 경영진]	10	31	41	75.6
	<b>[現 경영진]</b>	<b>328</b>	<b>11</b>	<b>339</b>	<b>3.2</b>
	소계	338	42	380	11.1
①+② 합계	[前 경영진]	64	215	279	77.1
	<b>[現 경영진]</b>	<b>328</b>	<b>123</b>	<b>451</b>	<b>27.3</b>
	합계	392	338	730	46.3

1) 기확인 350억원 : '20년 10월 ~ '24년 1월 중 대출 취급

2) 추가확인 380억원 : '23년 3월 ~ '24년 7월 중 대출 취급

- **(사례)** 정기검사 과정에서,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여신을 주도적으로 취급한 지역본부장 000이 F지점을 통해 전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에 여신 42.7억원(6건)을 취급하며 자금용도·상환능력 평가를 소홀히 하는 등 내규를 다수 위반\*하였고, 퇴직 후에는 전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차주社에 재취업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 (예) ①차주사 대표가 아닌 제3자와 여신 추진 및 상담을 진행

②장기공실 상가 인수를 위한 잔금대출을 진행하면서 매매대금 증빙을 미확인

<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의심대출 대표사례 >



\* 지역본부장은 퇴직 後 '24.4월부터 차주사인 상기 농업법인 (주)00에 취업하였고, F지점장은  
同 사실을 알면서도 부당대출 관계를 지속

- (고위 임직원 부당대출<sup>A은행</sup>) 전현직 고위 임직원 27명(본부장 3명, 지점장 24명)이 단기성과 등을 위해 대출심사·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부당대출 1,604억원을 취급하였고, 이 중 987억원(61.5%)은 現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하였습니다.

- (연체) 전체 부당대출(1,604억원) 중 1,229억원(76.6%)이 부실화되었습니다.

[참고] 대출심사·사후관리 부적정 (예시)

- ① [사업과 무관한 대출 취급] 고급 레지던스 취득 등 사업목적과 무관한 기업대출 승인
- ② [진위 여부 확인 소홀] 투자자 날인이 없는 투자계약서 등 서류에 대한 진위 미확인
- ③ [이상징후 묵인] 작업대출에 이용된 법인 대표가 대출 후 잠적하고, 법인이 폐업했는데도 부동산업자 등 제3자의 이자대납을 묵인하며 정상대출로 분류

- (사례1) 여신지원그룹 부행장 ○○○은 같은 교회 교인으로 알려진 대출 브로커 □□□를 부하직원\*이었던 지점장 △△△에게 소개 하였으며, 지점장은 브로커를 통해 여신 17.8억원(3건)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상환능력·소요자금 심사 등을 소홀히 하고 妻의 계좌로 38백 만원을 수수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 부행장 ○○○이 H영업본부장 시절, 지점장 △△△이 H영업본부 부지점장으로 근무

- (사례2) 지점장 ☆☆☆는 I법인의 부동산 매입자금 대출 250억원이 본부심사에서 거절되자, 차주와 공모하여 계약서 조건과 금액을 변경후 여신승인 부결시 차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여신 승인에 부정적이었던 담당심사역을 압박하여 여신을 승인하도록 하였으며, 대출금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등 차주관계자의 횡령을 방조한 혐의가 있습니다.

- **(영업점 부당대출<sup>B은행</sup>)** 팀장이 시행사·브로커의 작업대출에 조력하여 허위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공받아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를 선별하고, 대출이 용이한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부당대출 892억원을 취급하고, 일부 대출에 대해 금품 및 향응을 받은 정황을 확인(금액 미정)하였습니다.
- 또한, 대출 취급 시 청구한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는데도 추가적인 확인절차 없이 시설자금대출을 취급하거나, 여신서류를 직접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가계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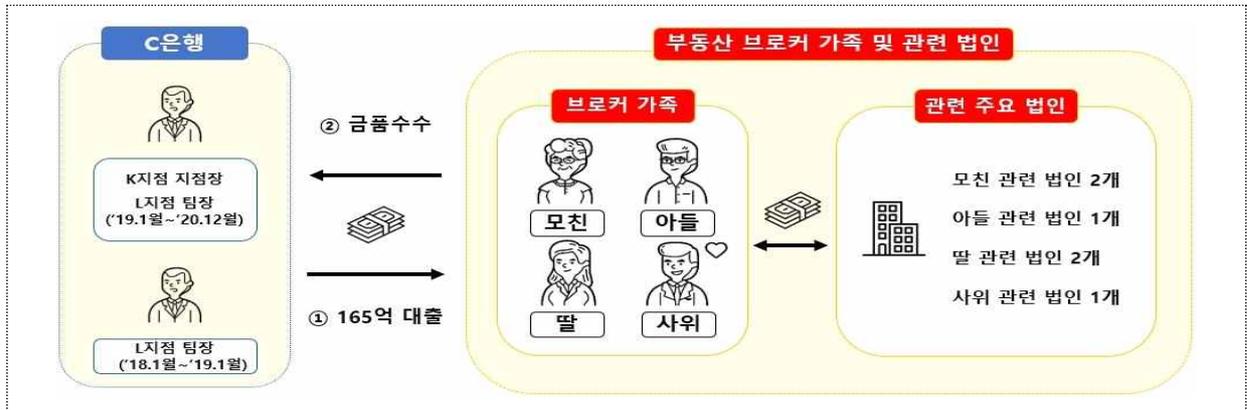
< 부당대출 취급 대표사례 >



- **(영업점 부당대출<sup>C은행</sup>)** 지점장·팀장이 브로커·차주와 공모하여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여신한도·전결기준 회피를 위해 복수의 허위차주 명의로 분할하여 승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대출 649억원을 취급하였고, 일부 대출에 대해 차주 등으로부터 금품 1.3억원을 수수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시설자금 대출금을 시설공여자가 아닌 브로커·차주 계좌로 지급하거나, 운전자금 대출 취급 후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점검\*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총 226억원의 대출금이 용도외로 유용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 운전자금은 대출실행 3개월내 차주로부터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제출받아 점검 필요

< 대출취급 및 금품수수 대표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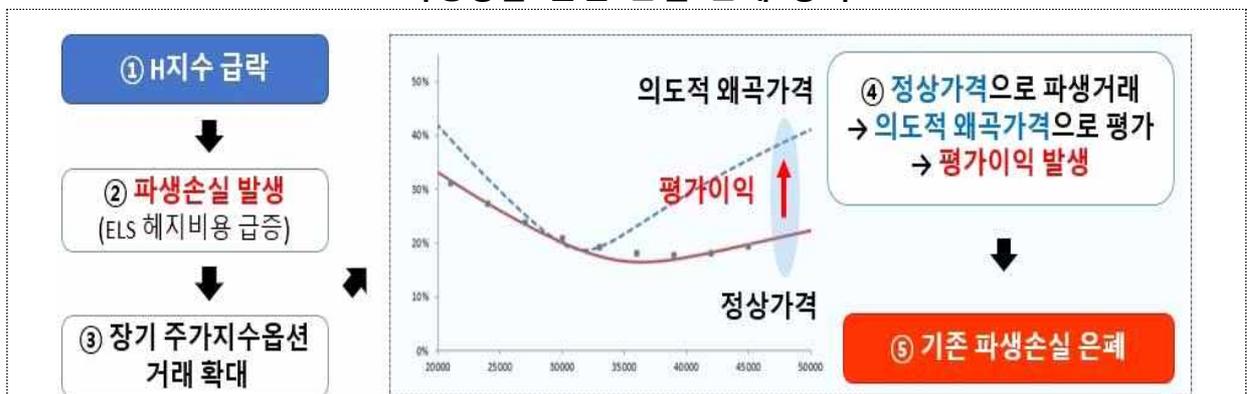


➔ ① 거액 부당대출 관련 범죄 혐의는 수사당국에 既 통보하였음

② 파생상품을 이용한 손익 조작

- (평가데이터 왜곡<sup>A은행</sup>) 파생상품 딜러(프런트)는 H지수 급락으로 파생장부 손실이 확대되자, 내부 손실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평가데이터 입력값(변동성값)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방법으로 손실 누적액(약 1,000억원)을 장기간(2년~) 숨긴 혐의가 있으며
- 리스크부서(미들)는 딜러가 의도적으로 왜곡한 평가데이터를 적절한 검증 절차 없이 사용하도록 방치하여 同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 파생상품 관련 손실 은폐 방식 >



\* (정상가격) 시장 호가로부터 산출한 변동성 값을 이용해 행사가격 만기별 예상가격을 산출 (왜곡가격) 사고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동성 가치를 왜곡

- **(선물 투기거래<sup>D투자증권</sup>)** ETF LP 업무 담당자(프런트)는 헤지 목적으로만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데도 성과급 등을 위해 투기적 선물거래를 지속\*(22년~)하다가 '24.8월 코스피 급락으로 대규모 손실(약 1,300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ETF LP 부서 성과에 반영되지 않아야 할 트레이딩 수익이 성과급에 반영되고 담당 임원은 트레이딩 수익 창출을 독려하며 투기적 선물거래를 조장

- ETF LP 부서는 투기적 선물거래로 발생한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하루만에 1,300억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비상식적인 스왑계약을 위조하는 등 조직적으로 부서 손익을 조작하였고,
- 관리회계 부서는 각 부서의 월별 손익 자료를 검증해야 하는데도, 검증업무를 미이행하여 ETF LP 부서 임직원에게 수십억원의 성과급이 부당하게 지급되었습니다.

### 3 은행 영업행위 관련 전산시스템 미흡<sup>A·C은행</sup>

- 은행 전산 개발·구축·운영 업무 대부분을 외주화\*하고, IT인력 대부분이 본점과 이격 근무하거나, 상당수가 계열사에 파견·겸직 형태로 근무함에 따라

\* 사업부서 IT개발 요청사항을 분석하여 IT개발 요건을 정의·지원하는 업무도 이관

- 여신관리, 신용정보보호 등 영업행위 관련 전산시스템 전반이 부실하거나, 계열사에 의뢰하여 개발한 전산시스템 설계 오류를 뒤늦게 발견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 (예) 비대면 대출상품 관련 시스템 설계 오류로 금리 감면 대상자로부터 이자를 과다 징수한 사실을 시스템 개발일로부터 약 2년 후 발견

#### 4 온정적 문화 등 금융사고 대응 부실

- **(온정적 징계<sup>A은행</sup>)** 前회장이 행장 재임 시절 대폭 완화\*시킨 여신 관련 징계기준을 현재까지 방치하여, 여신 관련 사고자 상당수가 견책 이하의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 (예) 중과실 기준 [A은행] 귀책금액 10~20억원(비외감 5~10억원) "견책"  
[B은행] 귀책금액 2억원 이상 "감봉 이상"

- 징계예정자에 대해 합리적 기준 없이 제재 완료 前 포상·승진을 시행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징계 효과가 면탈(免脫)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 **(대형 금융사고 미보고<sup>A·C은행</sup>)** 前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혐의를 인지하고도 이를 금융당국에 5개월간 미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금감원 검사 및 검찰 수사가 지연되었습니다.

- 다수 은행이 금융사고 예방·보고 체계가 미흡하고 경직된 조직 문화로 내부고발 제도 등이 활성화되지 않아 금융사고를 발견하고도 금융당국에 미보고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 **(느슨한 영업점 감사체계<sup>B은행</sup>)** 최근 개별 영업점 전결여신에서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도 영업점에 대한 ①내부감사 주기를 일률적(3년)으로 운영하고, ②감사기간도 짧아(3~4영업일) 심도 있는 감사업무 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은행의 여신 이상징후를 적발하는 시스템에 금융사고 정보가 적시에 반영되지 않아, 과거 발생한 사례 위주로 사고 위험분석이 이루어져 사고 조기 탐지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 **(원인)** CEO가 재임 중 외형 확대에 치우쳐 과도한 경영목표를 제시하고, 임직원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건전성·리스크관리, 이사회 절차 등 경시

### 1 자본비율 산출 오류 및 건전성 관리 부실

※ 지주는 그룹內 숨겨진 부실 위험까지 포함하여 리스크를 면밀하게 측정·관리하여야 하나 이에 미흡하였고, 이를 모두 반영 시 A·B지주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0~20bps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미인식<sup>다수지주</sup>)** 책임준공형 사업장의 비중이 높은 계열 신탁사에서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자본비율 산출 시 관련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요인)

- 신탁사는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 불이행 시 자금을 투입하여 통상 6개월 내 건물을 준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주단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 통상 PF대출 원리금

- 이처럼 책임준공 확약은 PF 사업에 있어 신용보강\*으로 인식되는 등 그 경제적 실질이 계약이행보증과 유사하여 계약 시점부터 손해배상 예정 금액(PF 약정액)에 대해 대손충당금 및 위험가중 자산을 산출하여야 하나,

\* 중소형 건설사가 신탁사의 책임준공 확약을 통해 신용도를 보강하여 PF 자금을 조달

- 다수 지주는 시공사의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신탁사가 추가 투입한 대출 금액에 대해서만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고 손해배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판단하여 부실 위험을 선제적으로 인식·관리하지 못했습니다.

- **(리스크 인식·측정 미흡<sup>A지주</sup>)** 자본비율이 他社 대비 열위에 있는데도 고위험 자산\* 위주의 투자성향을 지속해 온 반면, 그룹 전체의 리스크를 인식·측정·관리하는 업무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요인)

\* 주가지수옵션 거래 확대, NPL 사업 확충 등

- **(자본 공제항목)** 미래에 실현될 수익에 의존하는 이연법인세자산 등 자본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이 보통주 자본에서 공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신용리스크)** 복수의 자회사가 동일 사업장에 공동투자를 진행하여 트랜치 순위가 같은데도 자회사별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다른 사례가 확인되었고,

연결 대상 펀드가 대출채권 등을 보유한 경우 同 자산에 대한 미사용약정 관련 대손충당금 및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여 반영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였습니다.

- **(운영리스크)** 은행에서 파생상품 관련 대규모 손실을 수반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반영하지 않았고,

은행 이외 자회사의 경우 운영리스크 손실사건 데이터를 자동으로 입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거나 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는 등 지주 차원의 관리가 미흡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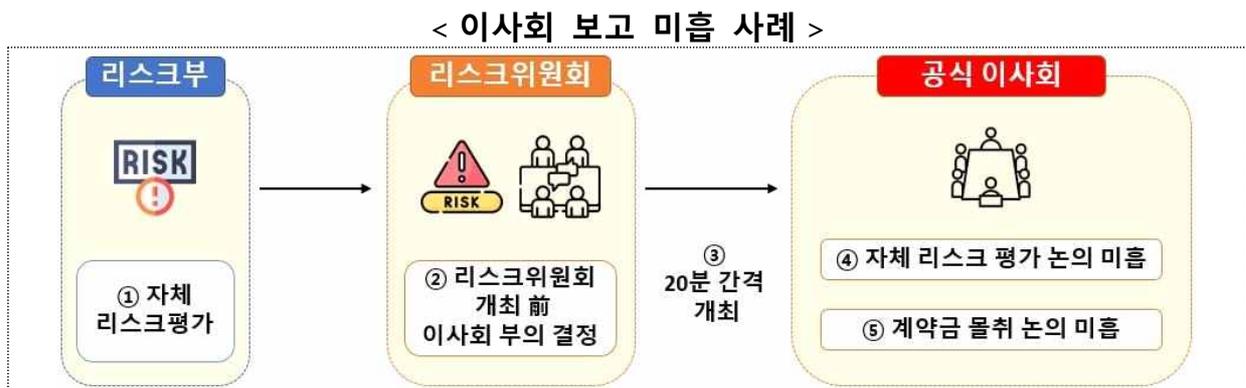
\* (예) 손실사건을 협소하게 정의하고, 손실사건에서 제외된 내역에 대해 제외 사유를 미입력

- **(중장기적 계획 없는 자본유출<sup>C지주</sup>)** 자본비율이 동류그룹 대비 열위\*에 있는데도 중장기 자본관리계획 등 고려 없이 매년 대주주에 거액의 배당 등을 지급함으로써 자체 위기대응능력이 약화되었습니다.

\* 단순자기자본비율이 전체 은행지주 중 최저 수준

## 2 M&A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절차 준수 소홀

- (M&A시 의사결정 절차 미흡<sup>A지주</sup>) 지주회장은 자회사 M&A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개최되기도 前에 同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미리 결정하였고,
  - 주식매매계약 당일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이사회를 불과 20분 간격으로 개최함에 따라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 내용이 이사회 안건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 내규에 따르면 M&A 등 중요 경영사항 추진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이사회 의사결정에 반영하여야 함
- 지주의 자회사 편입 관련 인허가권을 가진 금융당국이 인허가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몰취하는 조항\*이 주식매매계약에 포함되었는데도, 이러한 중요사항이 공식 이사회 석상에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 \* 과거 A지주가 여타 자회사를 인수할 때는 인허가 실패 시 계약금을 반환받는 조건이었음



- (해외 자회사 지원시 의사결정 절차 미흡<sup>B은행</sup>) 해외 자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결정시 송금일 당일 아침에 이사회에 자금 송금 필요성만 우선 보고하여 자금지원을 사실상 先결정하였으며, 당일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사후적'으로 개최하여 국가별 익스포져 한도를 상향하고 2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자금 송금 관련 리스크에 대해 리스크관리위원회 차원의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 자회사가 소재한 국가는 2개월 전에 내부 기준상 요주의 국가로 분류되어 국가 리스크 한도가 축소되었는데도 자금송금을 하기 위해 한도 상향

- **(경영목표 변경 시 이사회보고 소홀<sup>A</sup>지주·은행)** 지주·은행 모두 '기업 금융 확대'라는 '24년 경영목표\*'를 수립하였으나,

\* [지주] 기업금융 시장지위 제고 → 연결 총자산 6% 성장  
 [은행] 기업금융 명가 재건 → 대기업 30%, 중소기업 10% 대출 성장

- 은행은 '24.3분기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자본비율 하락 방어\*'를 위해 이사회 보고·논의 없이 기업대출 감축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KPI를 수정\*\*하였습니다.

\* 위험가중치가 높은 기업대출을 축소하여 위험가중자산을 감축함으로써 자본비율 제고

\*\* ①기업대출 취급 실적 평가 기준월을 '24.12월말에서 10월말로 두 달 단축  
 ②'24.10월말 기업대출 잔액 기준 '24.12월말 기업대출 감축분에 대해 가점 부여

- 특히, 지주는 주요 자회사인 은행 경영진이 지주 경영계획과 상치(相馳)되도록 영업목표를 임의 변경하였는데도 이를 통제하지 못하여 은행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이 훼손되는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 3 SPC 등을 통한 계열사 우회지원

- **(NPL 사업 우회지원<sup>A</sup>은행)** 高위험 NPL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열사(자본금 200억원)에 계열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특수목적회사(SPC)가 발행한 NPL 후순위채권 등을 담보로 약 3,50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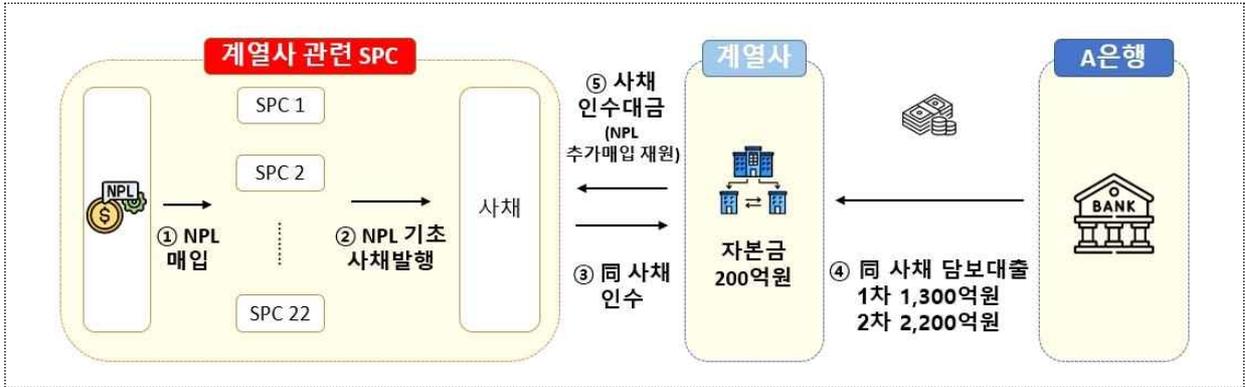
\* 「금융지주회사법」상 부실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시 지주회사등에 대한 채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SPC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회 회 규제를 우회

- 계열사는 회 대출자금으로 NPL 등을 추가 매입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는 순환 구조를 통해 외형을 확대\*함으로써 그룹內 신용리스크 및 부실전이 위험이 동반 상승\*\*하였습니다.

\* 계열사(자본금 200억원) 자산규모 : ('22말) 3,361억원 → ('23말) 8,777억원 → ('24.9말) 1조 3,802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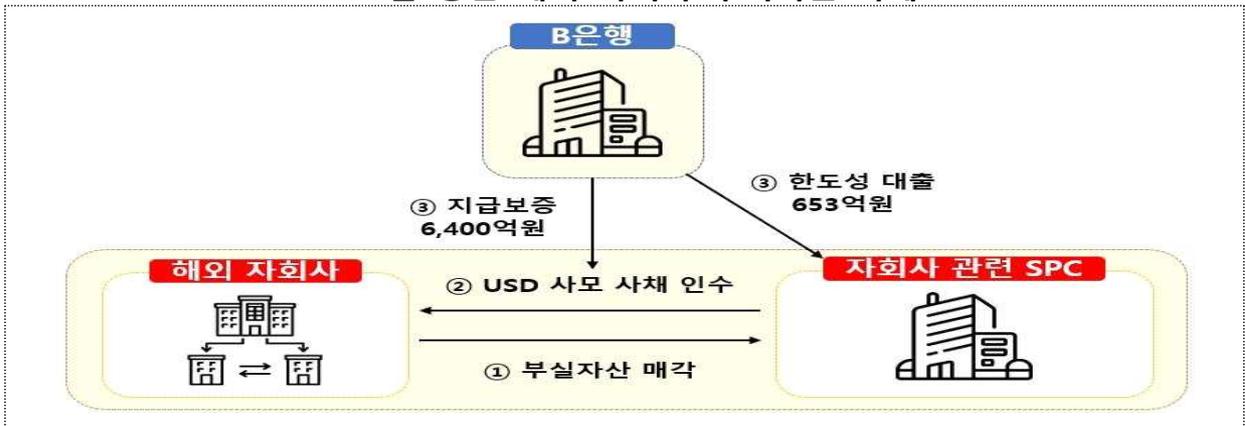
\*\* 계열사는 연초 지주가 부여한 리스크 유형별 허용한도를 대폭 초과 → 지주는 이에 대해 별도 조치하지 않는 등 지주 차원의 실질적 리스크관리 미흡

< NPL 사업 우회지원 사례 >



- (해외 자회사 우회지원<sup>B은행</sup>) 자회사의 건전성 지표 개선을 위해 자회사의 부실자산을 은행이 사실상 지배하는 SPC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해당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매각대금)에 대해 지급보증 6,400억원 및 한도성 대출 653억원을 제공하는 등 우회적으로 자회사를 지원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자회사의 부실채권 위험을 은행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됨에 따라 신용리스크 및 부실전이 위험이 동반 상승하였습니다.

< SPC를 통한 해외 자회사 우회지원 사례 >



- (대주주 우회지원<sup>C지주·은행</sup>) '22년 금감원 정기검사 시 은행이 지주의 대주주 특수관계인인 ◎◎재단에 222억원을 지정기부하는 방식으로 대주주 목적사업(◇◇기계, 승합차량 보급사업)을 우회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어 내부통제절차 강화\*\*를 지도하였으나,
- \* C은행이 ◎◎재단에 지정기부 후, C지주의 대주주는 자기자금 100억원과 ◎◎재단 기부재원 290억원(은행 기부금 222억원 포함 지주 산하 5개 계열사 기부금)을 이용하여 목적사업 진행
- \*\* 대규모 기부금에 대한 이사회 검토·승인 절차 마련 지도

- '24년 검사에서도 자회사의 기부금 관련 지주 차원의 통제절차가 미흡하고, 대주주 및 계열사 여신을 조기경보 등 여신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재무위험 등 영향 분석 없이 대주주 지원성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우회적인 대주주 및 계열사 지원 행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4 브릿지론, 자회사 간 공동투자 등 고위험 자산 관리·통제 미흡

- **(브릿지론 편법 취급<sup>B은영</sup>)** 자체 신용평가모형上 브릿지론 취급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영업부서는 이를 우회하여 부동산담보대출로 편법 취급하였고, 이 과정에서 철거 예정인 건물의 임대료 수입을 상환능력에 반영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브릿지론 9,290억원 (9건)을 취급하였습니다.

\* ①철거 예정 건물 임대료 수입을 채무상환능력에 반영, ②사업부지 매입 前 대출실행 등

- **(브릿지론 통제 미흡<sup>A지주</sup>)** 그룹 차원에서 리스크관리 목적으로 브릿지론 취급을 금지하였으나, 자회사가 지주와 사전협의를 완료 하지 않고 브릿지론(60억원) 취급 후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지주는 자회사가 리스크 조치사항을 미준수한 사실을 이사회·경영진에 보고하지 않고, 자회사 제재 및 평가에도 반영 하지 않는 등 지주의 리스크 관련 보고 체계 및 자회사 관리 등 업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부동산담보대출 부실 이연·확대<sup>B은영</sup>)** 美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취급 후 대출이 사실상 부실화\*되었는데도 정상 신용등급으로 평가하고, 여신조건을 변경하여 기한 연장 및 추가 대출을 실행 하는 등 부실 2,200억원(1건)을 이연한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 ①임대율 하락 등으로 계약상 자동연장조건 미충족, ②차주가 사실상 상환 불가 의사 표명

- **(자회사 간 공동투자 관리 미흡<sup>A지주</sup>)** 1천억원 이상 자회사 간 공동 투자에 대해서는 내규상 사업추진 타당성을 미리 점검하여야 하나, 부서 간 업무조정 과정에서 상기 통제절차를 누락하여 '24년 이후 신규 공동투자에 대한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는 등 지주의 내부통제가 무력화되었습니다.

◆ (원인) 고객 자산관리 및 정보보호를 통해 금융소비자와 동반성장의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단기 실적에 경도되어 부당 영업행위를 자행

### 1 부당 영업행위 관련 소비자피해

○ (최저생계비 부당 상계<sup>다수은행</sup>) 연체 발생 시 차주의 자행 예금과 대출을 상계\*하면서 최저생계비(185만원) 등 「민법」상 압류금지채권까지 상계 대상에 포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였습니다.

- 특히, A은행의 경우 차주의 타행 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하여 타행이 자행 예금 상계를 요청하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지급한 반면, 자행 예금은 제한 없이 상계하는 등 최근 10년간 4.6만명(‘14.10월 ~ ‘24.9월, 약 250억원)의 압류금지채권을 부당하게 상계하였습니다.

※ 최저생계비 상계 관련 은행권 정보공유 확대, 소비자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제도 개선 예정

○ (금투자상품 불판<sup>A·B·C은행</sup>) H지수 ELS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금소법」상 판매규제를 위반하였습니다.

※ A은행의 경우 ELS 판매 규모(약 400억원)는 상대적으로 작으나, 이는 은행권 자율결의(‘19.12월)로 정한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한도에 따른 결과이며, 관련 내부통제상 취약점은 타행과 유사

- 증권신고서가 제출·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한 투자설명서를 사용하지 않고 투자자 약 1,000명(투자금액 약 2,200억원)에게 청약권유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습니다.<sup>A은행</sup>

○ (청약철회권 제한<sup>A은행</sup>) 대출성 상품 철회신청 만료일(14일)에 비대면 철회 신청이 불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금소법」상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였습니다.

\* 대출 계약체결일~13일까지 비대면 철회권 신청이 가능하나, 14일째 되는 날은 신청 불가

- **(자격없는 직원에 의한 상품 판매<sup>B은행</sup>)** 교육 미이수로 인해 투자권유 자문인력 자격이 없는 직원이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투자권유·판매한 사례(23건, 16.6억원)가 확인되는 등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위반하였습니다.
- **(구속성 영업행위<sup>E은행</sup>)** 전산 설계 오류로 취약소비자(신용평점 하위 10%)에게 대출성 상품 취급 1개월 전후로 예금상품(47건)을 판매한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 2 고객정보 보호 소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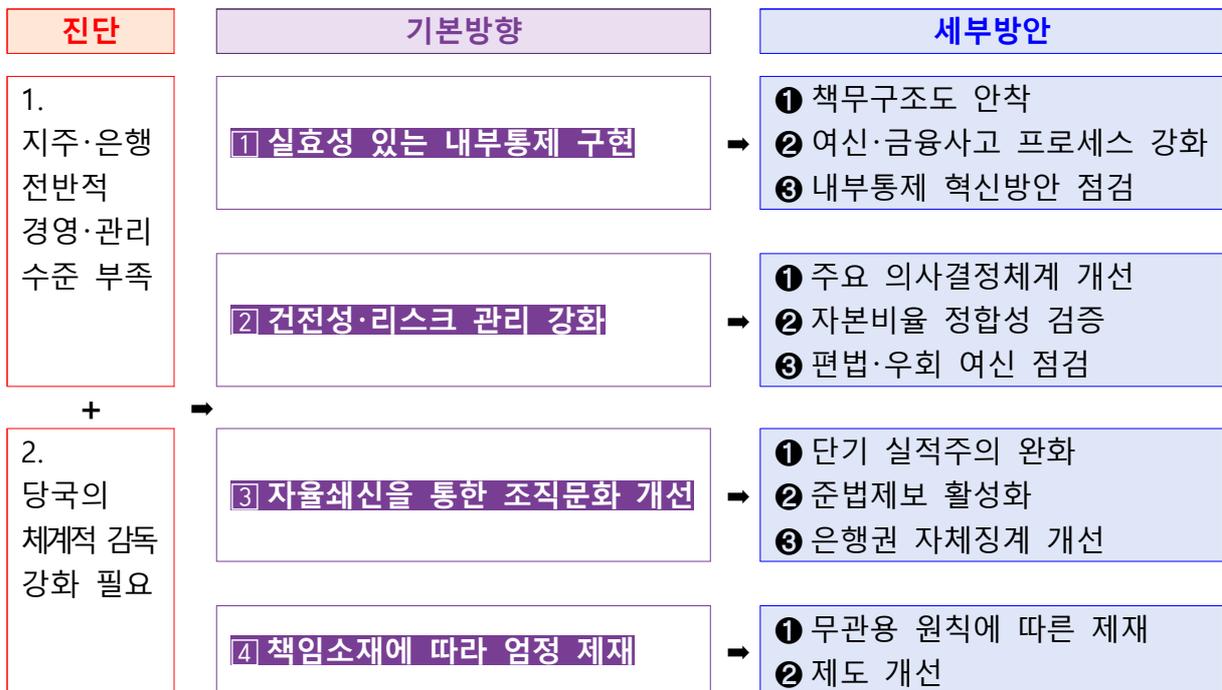
- **(개인신용정보 관리 불철저<sup>B은행</sup>)** 고객 개인신용정보 무단조회 의심 사례\*에 대해 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하지 않거나(약 2만건),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의무를 위반하고 가명정보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운영하지 않는 등 「신용정보법」을 위반하였습니다.
- \* '21.9월~'24.8월 중 모임통장, 배우자 자동이체 내역 등 사적 목적의 무단 조회 의심 사례
- **(고객 거래정보 제공 미통보<sup>E은행</sup>)** 법원 등 외부기관 요청으로 고객 거래정보를 제공하면서도, 고객에게 기한(10일) 내 정보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약 1,300건), 정보제공 내역을 적정하게 기록·관리하지 않는(약 5만건) 등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였습니다.
- **(고객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 전송<sup>C은행</sup>)** 약 300개 영업점에서 은행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 고객(1.5만명)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를 전송(약 2만건)하였습니다.

※ 다수 지주는 주요 자회사인 은행에서 이처럼 소비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그룹 차원의 소비자 보호 문화 정착, 소비자 보호 기능 제고 등 노력을 소홀히 함(단기 실적, 외형 성장 등에 몰두)

## IV. 향후 처리방향

◆ 이번 검사결과 드러난 은행지주 경영·관리상 취약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할 계획

➔ (기본방향) 금감원은 ①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현, ②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③조직문화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이번 검사결과 확인된 명백한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④엄정 제재할 예정



### 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현

- (책무구조도 안착) 새로 도입된 책무구조도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책무구조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향후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임직원에게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 (여신·금융사고 관련 프로세스 강화) 여신 등 영업행위 관련 업무·전산 프로세스를 면밀하게 점검하여 금융사고 예방 장치를 고도화 하는 한편 금융사고 발생시 신속·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내부통제 혁신방안 점검)** 그간 추진해 온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된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보완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2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한 건전성·리스크관리 강화

- **(주요 의사결정체계 개선)** 이사회가 회장·경영진의 독단적 의사 결정에 맞서 감시·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통해 제시된 원칙\*을 중심으로 확인·평가할 계획입니다.

\* (예) ①이사회 사무국 등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강화, ②이사회 회의자료 조기 송부(최소 7일 전), ③사전 간담회시 관련 논의내용 기록관리 강화 등

- 특히, 영업부서 - 리스크담당부서 - 리스크관리위원회 - 이사회로 이어지는 전사적 리스크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 **(자본비율 정합성 검증)** 자본비율 산출 과정의 적정성, 중장기 자본 관리 계획에 근거한 자본 유출입 통제 등 자본관리 측면을 세밀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 **(편법·우회 여신 점검)** 또한, 기존의 건전성·리스크관리체계를 훼손할 수 있는 편법·우회적 여신·투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3 자율새신을 통한 금융권 조직문화 개선

- **(단기 실적주의 완화)** 은행권에 누적된 문제점은 지난 수십 년간 고착화된 단기 실적 중심의 조직문화가 주요 원인이라는 인식 아래 은행권 단기 실적주의를 완화\*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 (예) 성과평가지표 중 수익성 부분 편중 해소, 성과보수 유보·재산정 기준 정비 등

- **(준법제보 활성화)** 금융권의 자정기능 강화를 위해 준법제보(내부고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임직원의 준법·윤리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 **(은행권 자체징계 개선)** 은행권 자체징계 기준을 점검·개선하여 상호견제 및 신상필벌의 엄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 4 책임소재에 따라 엄정 제재

- **(무관용 원칙)** 금감원은 정기검사를 통해 확인된 부당대출 취급 등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제재하겠습니다.
- **(제도 개선)** 법규 위반은 아니나 정기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영·내부통제상 취약점을 신속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24년 정기검사 대상이 아닌 他 지주·은행은 이번 '24년 검사 내용에 대한 자체 점검계획을 '25년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등 자체감사를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